



송 재 현 공인회계사/세무사
대현회계법인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및 석사 학위 취득
- 공인회계사, 세무사(1986년 취득)
- 안건회계법인 근무(1984년~1991년)
- 개인사무소 운영(1991년~2000년)
- 화인경영회계법인 송파지점 대표(2000년~2002년)
- 대현회계법인 대표이사(2002년~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중소기업에게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보면,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과는 그 요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여러 가지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가능하다.

2.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중소기업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래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자활용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감상 실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물류산업, OEM 수탁받아 재워탁하는 사업, 자동차정비업,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통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통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 이내인 기업

3)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의결권이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간접소유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기업

4) 졸업기준 이내의 기업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 1천억원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의 기준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가 없다.

3. 중소기업의 판정

1) 업종 구분

중소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주된 사업의 업종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해당업종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업종은 관련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때, 둘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다면 주된 사업은 사업별의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축산업은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므로 그 외 종업원수, 자본금, 독립성요건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자기자본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수에서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수로 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자본금은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이며, 자산총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총액이며, 자기자본

[별표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해당업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제조업	D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2. 광업 건설업 운송업	C F 60~62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3. 대형증합소매업 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병원 방송업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4. 종자 및 묘목생산업 어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화과용품도매업 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운영업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상시 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5. 도매 및 상품증개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자연과학연구개발업 공연사업 뉴스제공업 식물원 · 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서비스업	51 712 731 873 881 8823 90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6. 그밖의 모든 업종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① 적용대상

- 종업원수 · 자본금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을 초과하는 경우
- 위에서 제시한 출입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적용방법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의 3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본다. 그리고, 해당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③ 적용제외

-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유예기준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한 경우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주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외로 변경되는 경우 